제1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7.12.)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용]

목 차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2 - 47호

_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_ 검 토 보 고 서 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7. 0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2. 07. 04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고 있던「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심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2조)
 -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삭제)
-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변경함(안 제3조)
 - 군수 ⇒ 부군수로 변경함
-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에, 잔여기간 ⇒ 남은 기간,월 ⇒ 개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O「사회복지사업법」제7조2
 - O「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4, 제1조의5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입법예고(2012.03.20. ~ 2012.04.09.)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 심의 기능(긴급복지지원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군수 ⇒ 부군수)을 변경하는 등 체계와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군수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 기 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한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되며
- O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2.5] [법률 제10998호, 2011.8.4, 타법개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 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타법개정]

-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의안번호 제2012 - 48호

_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__ _ 검 토 보 고 서 _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7. 0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2. 07. 0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4종)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2조)
 -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
-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3조)
 -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라. 기금은 용도별로 관리, 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함(안 제5조)
- 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 ~ 제12조)
 - 노인복지사업 : 군내 노인관련 단체
 - 여성복지사업 : 군내 여성관련 단체 및 여성관련 사업 수행 단체 등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으로 나누어 지원
 - 기초생활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 생활안정 지원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
- 바.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3조)
- 사.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
 - O「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 나. 예산조치 : 30억(기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2.03.20. ~ 2012.04.09)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각 각 다른 조례로 제정·운용되어오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등 사회복지관련 유사기금 (4종)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명시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거창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대행)를 두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해당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별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기금출납원(담당주사)을 두고 기금관리 대장과 지출 증빙 서류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과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토록 하였고
-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O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사한 기금의 통합관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O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제142조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시행 2011.5.30]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일부개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 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의안번호 제2012 - 4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7. 0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2. 07. 04

2. 개정이유

O 이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4급이상 1% 이내, 5급 6.7% 이내, 6급 28.2% 이내,

7급 31%이내, 8급 25.3% 이내, 9급 7.8% 이상

○ 조정 : 4급이상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8% 이내,

7급 31%이내, 8급 26% 이내, 9급 7% 이상

- 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6급 10% 이내, 7급 23% 이내, 8급 23% 이내, 9급 44% 이상
 - 조정 : 6급 11% 이내, 7급 25% 이내, 8급 23% 이내, 9급 41%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정원 : 증 2명
 - 현행 : 650명(본청269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5명, 사업 소54명, 읍39명, 면149명)
 - 조정 : 652명(본청272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6명, 사업 소54명, 읍38명, 면148명)
- 일반직 6급이하 : 증 9명
 - 현행 : 514명(본청220명, 의회5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 34명, 읍34명, 면136명)
 - 조정 : 523명(본청227명, 의회7명, 직속기관86명, 사업소 34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 감 7명
- 현행 : 64명(본청31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2명)
- 조정 : 57명(본청27명, 의회4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O 「지방공무원법」제4조,
- O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 24, 30조
- 나. 예산조치 : 연 82,00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 다. 입법예고(2012.05.22. ~ 2012.06.11.)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O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012년 전환인원(7명)과 총액인건비 국가시책 기준정원 반영(2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650명 →652명(2명 증원)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636명 →63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제별표 일반직공무원 정원조정

구	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정 원	553명	4명	35명	151명	171명	139명	53명
	비 율	100%	1%이내	6.7% 이내	28.2% 이내	31% 이내	25.3% 이내	7.8% 이상
조정	정 원	562명	4명	35명	151명	172명 (1명)	144명 (5명)	56명 (3명)
	비 율	100%	0.7% 이내	6.2% 이내	26.9% 이내	30.6% 이내	25.6% 이내	10% 이상
	조정율	100%	1%이내	7%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 이내	7% 이상

- 안 제별표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 -11	정 원	64명	6명	14명	14명	30명
현 행	비 율	100%	10%이내	23%이내	23%이내	44%이상
- 7 -2]	정 원	57명	6명	14명	10명 (-4명)	27명 (-3명)
조 정	비 율	100%	11%이내	25%이내	23%이내	41%이상

- O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총액 인건비 국가시책 기준정원 반영 내용을 조정하기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O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지방공무원법」제4조

[시행 2011. 8.24] [법률 제10700호, 2011. 5.23,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 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6.8>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 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0.6.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시행 2012.2.28] [대통령령 제23633호, 2012.2.28, 일부개정]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 24, 30조 [시행 2012.4.10] [대통령령 제23712호, 2012.4.10,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 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 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 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 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 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번호 제2012 - 50호

_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검 토 보 고 서 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7. 0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2. 07. 04

2. 제안이유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지방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정수의 1/3이상 이 어야 함
-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1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O『지방자치법』제142조
 - O「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 나. 예산조치 : 5억(기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2. 5. 31. ~ 6.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 ·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이상이어야 하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함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였음
- O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O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5.30]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12 - 51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7. 0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2. 07. 04

2. 제안이유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5조)
 -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 이나 활동

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의 받아야 함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O「지방자치법」 제142조
 -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 나. 합 의 : 기획감사실
- 다. 입법예고(2012. 05. 31. ~ 06.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명시하고 있음
 - o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금,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수입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토록 규정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기금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시설 관리사업소장)과 기금출납원(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을 두도록 함
- **안 제8조**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명을 포함 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O 당연직 위원(시설관리사업소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며 회의는 필요시 개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 도록 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며
- O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5.30]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